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12일,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8.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8.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
안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9.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
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의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해식)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 <u>광역시장</u>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 <u>광역시</u>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⑦ (생략)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 <u>통합특별시·광역시</u> ----- ----- ----- ----- ----- ----- -----.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 ② (생략)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illegible]

④ (현행과 같음)